

조례 제 호

부산직할시사하구기구조례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기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산직할시사하구기구조례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사하구(이하 "구"라 한다)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구기) ①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제1호와 같이 한다.

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.

제 3 조(문장) ① 구 문장은 별표 제2호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.

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,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,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

2. 구청장 명의로 각종 허가, 인가, 면허증과 구 공공시설, 구소유 및 구관리 물자

3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, 시설 및 물자

제 4 조(휘장)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제3호와 같이 한다.

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
1.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

2.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.

3.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.

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(별지 서식)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.

제 5 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서식>

회 장 증 여 대 장

번 호	증여인원	국 적	성 명	주 소	증 여 사 유